

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제8조의3 관련)

1. 선전벽보의 부착

가. 선전벽보의 작성 및 제출

법 제53조제8항제1호(법 제108조,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라 선전벽보의 부착을 통하여 선거운동을 하려는 후보자는 아래의 기준에 따른 선전벽보 1종을 작성하여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(이하 이 표에서 "선거관리위원회"라 한다)에 제출하여야 한다.

- 1) 선전벽보의 규격은 길이 53센티미터 너비 38센티미터로 한다.
- 2) 선전벽보 게재사항: 선전벽보에는 후보자의 기호·사진·성명·주소·생년월일·학력·주요경력 및 선거공약만 게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학력게재에 관하여는 「공직선거법」 제64조제1항을 준용한다.

나. 제출된 선전벽보의 부착

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선전벽보를 확인하여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선거인의 통행이 많은 곳의 통행인이 보기 쉬운 건물 또는 게시판 등에 조합원 50명 내지 100명당 1매의 비율로 부착하되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벽보를 부착하지 아니한다.

- 1) 후보자가 가목1) 및 2) 외의 부분에 따른 제출마감일까지 선전벽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
- 2) 후보자가 가목1)에 따른 규격을 넘거나 미달하는 선전벽보를 제출한 경우

다. 그 밖의 사항

- 1) 제출된 선전벽보는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없다. 다만, 해당 후보자는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이 게재되었음을 이유로 가목1) 및 2) 외의 부분에 따른 제출마감일까지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있다.
- 2)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또는 후보자에게 선전벽보의 원고를 사전에 검토 받도록 안내하고, 검토 결과 법령 및 정관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관련 규정 등 이유를 제시하고 이를 수정하여 작성·제출하게 할 수 있다.
- 3)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할 선전벽보의 수량 및 제출시간을 선거일을 공고하는 때에 공고하여야 한다.
- 4) 선전벽보의 작성비용은 후보자가 부담한다.

2. 선거공보의 배부

가. 선거공보의 작성 및 제출

법 제53조제8항제2호(법 제108조,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라 선거공보의 배부를 통하여 선거운동을 하려는 후보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선거공보 1종을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) 선거공보 제출마감일 및 제출처

후보자는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구별로 제출할 매수와 장소를 정하여 그 지정장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2) 선거공보의 규격 및 매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.

3) 선거공보 게재사항

선거공보의 게재사항에 관하여는 제1호가목2)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선전벽보"는 "선거공보"로 본다.

나. 제출된 선거공보의 발송

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선거공보를 확인하여 가목1)에 따른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선거인에게 발송하되, 투표안내문과 동봉하여 발송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공보를 발송하지 아니한다.

1) 후보자가 가목1)에 따른 제출마감일까지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

2) 후보자가 가목2)에 따른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선거공보를 제출한 경우다. 그 밖의 사항

선거공보에 관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1호다목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선전벽보"는 "선거공보"로 본다.

라. 선거공보 전산원고에 관한 특례

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로 하여금 사진 및 선거공보 전산원고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까지 제출하게 한 후 각 후보자의 기호순으로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투표안내문과 동봉하여 선거인에게 발송할 수 있다. 이 경우 선거공보 전산원고의 제출시간은 선거일을 공고하는 때에 공고하며, 선거공보의 작성비용은 조합(법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중앙회를 말한다)이 부담한다.

3.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

가.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의 장소 및 기간

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(해당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

지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중에 제8조의2에 따른 장소에서 법 제53조제8항제3호(법 제108조,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라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을 배부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.

나. 명함 기재사항 및 규격 등

- 1) 명함에는 후보자의 성명·사진·전화번호·학력·경력 및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. 이 경우 학력 기재에 관하여는 「공직선거법」 제64조제1항을 준용한다.
- 2) 명함의 규격은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로 한다.
- 3) 명함의 작성비용은 후보자가 부담한다.

4.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

가. 개최 일시·장소의 지정 및 공고

- 1)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 후 후보자와 협의하여 적당한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법 제53조제8항제4호(법 제108조,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를 1회 개최한다. 다만, 후보자가 1명이거나 후보자 전원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2) 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일시·장소 등을 개최 2일전까지 공고하고, 후보자에게 통지한다.

나.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진행방법

- 1) 합동연설회의 연설순서는 연설당일에 추첨으로 결정하고, 연설시간은 후보자마다 30분의 범위에서 균등하게 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연설순서 추첨시각까지 후보자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보자를 대리하여 연설순서를 추첨할 수 있다.
- 2) 공개토론회는 후보자가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소견을 발표하거나 사회자를 통하여 참석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. 이 경우 사회자는 질문과 답변 횟수와 시간을 모든 후보자에게 공정하게 배정하여야 한다.

다.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관리

- 1) 후보자가 합동연설회의 본인 연설순서 시각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시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설 또는 토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.
- 2)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미리 지명한 관리자는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에서 후보자가 법령 및 정관에 위반되는 연설 또는 발언을 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할 수 있으며,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연설 또는 발언을 중지하게 하거나

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- 3)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또는 관리자는 합동연설회장 또는 공개토론회장에서 연설 또는 발언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,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합동연설회장 또는 공개토론회장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.

5. 전화(문자메세지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컴퓨터통신(전자우편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이용한 지지호소

가. 전화·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 방법

법 제53조제8항제5호(법 제108조,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라 전화·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려는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.

- 1) 전화를 이용하여 송·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방법
- 2) 문자(문자 외의 음성·화상·동영상 등은 제외한다)메세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방법
- 3) 조합(법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중앙회를 말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이 개설·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·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정보를 게시하는 방법
- 4)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방법
- 5) 1) 및 2)에 따른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야간(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를 말한다)에는 할 수 없다.

나. 전화·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관리

- 1)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은 법령에서 정한 제한행위에 해당하는 정보가 조합에서 관리·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(게시판·대화방 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게시된 경우 그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·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, 그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·운영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.
- 2) 1)에 따라 정보가 삭제된 경우 해당 정보를 게시한 자는 그 정보가 삭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- 3) 선거관리위원회는 2)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심의하여야 하며, 이의신청기간을 경과한 이의신청은 각하하고,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·운영자에게 1)의 삭제 요청을 철회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며,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다.

4) 가목2)에 따른 문자메세지 및 같은 목 4)에 따른 전자우편의 발송에 관하여는 「공직선거법」 제82조의5 및 「공직선거관리규칙」 제45조의4를 준용한다.